

日帝下 小作爭議運動의 展開와 本質에 관한 研究

朱 奉 圭

本稿는 日帝下 小作爭議運動의 전개와 본질을 구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10~18년간에 시행된 土地調查事業에 의해 구체화된 地主小作關係는 高率小作料 및 불안정한 小作期間에 의한 착취의 강화였으며, 이는 소작쟁의 운동의 발단을 이루는 것이었다. 즉 日帝下 소작쟁의 운동은 소작권유지 및 고율소작료의 減免을 쟁점으로 하고 있었으며, 노동운동 단체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었다. 소작쟁의 운동은 自主的, 自律的, 自生的 運動이기도 하였으며,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투쟁 운동이었다. 일제하 小作爭議運動은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과 더불어 反帝運動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第1次 世界大戰 이후 팽대된 民族自決運動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일제하 소작쟁의 운동은 近代의인 農民運動의 일환으로서 농민자주운동과 농민복지운동의 성격도 가진 것이었다.

1. 研究의 重要性

1910~18년에 걸쳐서 시행된 日帝下 土地調查事業은 大地主의 形成과 더불어 小作農의增加로 구체화되는 가운데 나타난 바 되었고, 지주 대 소작인의 小作生產關係는 철저한 植民主義下의 高率小作料 및 불안정한 小作期間 등에 의한 착취를 指目하는 地主主義의 土地制度의 表徵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 지주는 자의로 小作權을 이동하고 무제한으로 토지를 경영할 수 있었으므로 小作料는 실로 封建的 地代의 재판이라 하여도 무방할 정도의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地主와 小作農의 小作生產關係를 둘러싼 분쟁의 일환으로서 小作爭議運動의 발단이 있게 되었고 그것은 일부 지역의 농민에 의한 高率小作料의 撤廢 및 減免의 요구로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것은 그 후 여러 가지의 역사적 성격에서 함축성 있는 小作爭議運動으로 승화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本研究의 목적은 小作生產關係를 둘러싼 紛爭으로 야기된 小作爭議運動의 전개와 본질을 구명함에 있다.

2. 小作爭議運動 發端의 背景

日帝下 土地調查事業은 극소수의 大地主 형성과 더불어 다수의 小作農의 증가로 특수화

되어 나타나는 바, 그것은 土地調查事業 이후 韓國에 있어서의 토지소유의 독특한 類型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곧 현저한 樣相에 있어서 日本人 土地所有 그것이 舊來의 韓國人地主의 경우에 대비하여 한층 더 가혹하고 또한 거대한 규모로 집중되었다는 사실에서 그러하다.

日帝下 土地調查事業이 완료된 이후 즉 1921년에 100정보 이상의 地主 681명 가운데 韓國人 土着地主는 360명이고 日本人地主는 321명이었으나 해를 거듭함에 따라서 그 총수도 증가되어 1933년에 이르러서는 716명에 달한 바 그 가운데 당시 韓國人地主는 308명으로漸減되고 있는 반면에 日本人地主는 406명으로 오히려 漸增되고 있었다.

또한 200정보 이상의 지주구성에 있어서도 1921년의 韓國人地主는 66명이고 日本人地主는 169명이었으나 1933년에 이르러서는 韓國人地主는 43명으로 漸減된 반면에 日本人地主는 192명으로 漸增되고 있었다(表 1)。

土地制度의 근대화에 따라서大小地主의 토지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지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日帝下 土地調查事業 이후에 있어서 대체로 小作農에 대한 지배력이 강한 日本人系 地主〔宮嶋博史(1982, pp. 154~155)〕를 第 1型이라 하고 韓國人 土着地主〔宮嶋博史(1982, pp. 156~157)〕를 第 2型이라 하여 양자를 뚜렷이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

第 1型 地主는 農場式 또는 합리적 경영의 양식이라고 칭해지는 것으로서 個人名義 또는 會社組織下에 다수의 사무 및 기술직원을 고용하여 수 십정보 내지 수 천정보의 경지를 小作에 부치고 가장 진보된 組織化와 技術化를 행하여 합리적으로 기업화하고 있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經營主는 그 수가 200여명으로서 經營面積은 55만町步에 달하고 있었다. 그리고 經營主體는 日本人에 많았고 韓國人에 적었다. 그 밖에도 農

〈表 1〉 韓·日人別 大地主 比較

年 度		1921	1923	1925	1927	1929	1931	1933
100町步 以上	韓 國 人	360	289	344	290	340	319	308
	日 本 人	321	333	360	361	361	361	361
	其 他	—	—	—	—	—	—	—
計		681	622	704	651	703	682	716
200町步 以上	韓 國 人	66	67	45	45	40	49	43
	日 本 人	169	178	170	192	172	187	192
	其 他	—	—	—	—	—	—	—
計		235	245	215	237	212	236	235

資料：朝鮮農會(1944)의 附錄 第 4 表。

場式經營의 特징은 다수 小作人에 대하여 경영상의 金錢을 대부하고 小作人の 생계를 보증하여 耕地利用을 增進하는 土地改良事業을 촉진하고 따라서 토지의 生産력을 급격하게 증진시키며 公益事業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공헌을 하는 등 韓國農業은 물론 문화의 개발촉진에 기여한 바 실로 적지 않았으며 또한 韓國米作地帶의 農業이 이들 企業的 農業의 투자와 견실하고 합리적인 경영결과로써 놀랄 만한 進步・發達을 보기에 이른 것은 과거의 실적을 돌아보아 관찰하면 분명하다고 알려져 있다.

第2型에 속하는 地主는 韓國人例에서 많고 이 경우는 스스로 도시에 거주하며 耕地의 所在地方에는 대리인인 舍晉을 두고 小作自體는 自作으로 生산에 종속시키며 따라서 分配量도 구태의연한 것과 같은 경영이었고 따라서 이 第2型은 第1型에 비하여 구식의 것이었고 불합리한 경영이었다 [鈴木武雄(1942, pp. 262~263)]. 이에 第1型의 地主에 대응한 第2型의 지주를 封建地主로 보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土着地主로서 이른바 第2型의 地主라 할지라도 東洋拓殖株式會社 그 밖에 日本人 大地主의 영향을 받아서 동일한 성격으로 변형되었다는 견해 [李榮碧(1927, p. 238)]가 또한 없지 않고 보면 地主의 성격은 일단 외형적으로는 第1型 및 第2型의 구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實質적으로는 植民地開發政策이 가져온支配資本의 발전의 압력에 따라서 資本家의 타산성을 촉구하는 국면에 속해 있었으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小作料의 高率化를 기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모름지기 日帝下 土地調查事業 전후에 있어서 지주와 소작인의 동태를 살펴보면 地主의 累增에 대응하여 自作農의 減少에 따른 自小作 및 小作農의 增加傾向을 볼 수 있다. 즉 自小作 및 小作農의 합계로서 나타난 총체적인 비율은 실제로 76~77%라는 놀랄 만큼 압도적으로 우세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地主增加에 대응한 小作農의 增加는 바로 小作生產關係의 擴大의 징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집약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地主制度에 있어서 지주가 소작농으로부터 小作料를 징수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어 (1) 定租法, (2) 打租法, (3) 執租法의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 [朝鮮農會(1936, pp. 273~274)].

定租法은 농민들에 의하여 보통 賭只, 定賭 및 定賭只 등으로 통칭되던 것으로서 小作契約 체결시에 지주와 소작인이 일정의 소작료를 정하여 원칙적으로 當年의 豊凶에 관계없이 매년 約定小作料를 징수하는 방법이다. 定租法에 있어서는 지주와 소작인은 小作契約에 앞서 小作地의 面積, 地昧 및 收穫量에 대한 예비자식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이 小作料의

〈表 2〉 地主 및 小作階層動態

(單位 : 千戶)

年 度	總 計	地 主	自 作	自 小 作	小 作	比 率 (%)			
						地 主	自 作	自 小 作	小 作
1913	2,573	81	586	834	1,072	3.1	22.8	32.4	41.7
1918	2,652	82	523	1,044	1,004	3.1	19.7	39.4	37.7
1919~22	2,701	93	529	1,020	1,059	3.4	19.5	37.8	39.3
1923~25	2,718	102	533	944	1,139	3.8	19.6	34.7	41.9

資料：朝鮮農會(1944)의 附錄 第5表。

徵收方法은 비교적 수확량의 변화가 적은 無質肥沃地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며 주로 田에서 행하여지고 畑의 경우에는 많이 행하여지지 않았다. 즉 畑에 있어서는 水利灌溉施設의 불충분으로 말미암아 旱水害의 영향을 크게 받아 풍흉의 차가 크므로 定租法에 의거하는 것은 地主와 小作人의 양측에 모두 불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畑의 경우에는 灌溉排水가 완비된 良畠이 아니면 이 방법은 채택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小作料率은 전반적으로 50~60%가 가장 지배적이었고 다른 小作料徵收方法에 비하여 더욱 高率化되는 경향에 있었다. 種子, 肥料, 農器具 등은 小作人이 부담하며 地稅는 지방에 따라서 小作人이 부담하기도 하고 地主가 부담하기도 하며 때로는 契約에 의하여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打租法의 경우는 농민들에 의하여 보통 打作, 並作, 半作 및 半租 등의 명칭으로 불리던 것으로서 地主 또는 그 代理人이 함께 입회하여 수확시에 實收穫物을 약정한 소작료율에 따라서 징수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小作料額도 豐凶에 대응하여 변동하며 고정되지 않는다. 地主와 小作人은 토지의 소재와 면적에 대한豫備知識을 가짐으로써 足하고 定租法에서와 같이 土地와 收穫量에 대한 정확한 예비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小作料는 보통 50%가 지배적이었으나 약간의 上昇傾向이 보이고 또한 地稅, 種子, 農具 및 肥料의 負擔關係와 麥稈의 귀속관계 등에 의하여 실제의 小作料의 徵收率에 다소의 차이가 있었다 [朝鮮總督府農林局(1934, p. 117)].

執租法은 농민들에 의하여 보통 執種看坪, 看穗 및 檢見 등으로 불리었던 것으로서 수확전 소작지의 작물이 立稻 그대로 있을 때 지주 또는 그 대리인이 小作人 立會下에 작황을 檢見看坪 또는 坪刈하여 收穫豫想量을 추정하여서 約定小作料率에 따라 小作料를 징수하는 방법이다. 물론 풍흉에 대응하여 小作料額은 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地主와 小作人은 토지의 소재와 면적에 대한 예비지식을 갖고 있으면 足한 것이지만 地味가 불량하고 재해가 심하면 檢見이 어려우므로 비교적 地味가 양호하고 災害가 적은 지역에서 행하여지

고 있었다. 小作料率은 打租法과 마찬가지로 50%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 지배적이나 王朝地主側이 주로 檢見評價하므로 實納小作料率은 실제 수확량의 60% 이상에 달하는 경우도 많았다 [朝鮮總督府農林局(1933, pp. 171~172)]. 그리고 種子, 農器具, 肥料 등은 모두 小作人 부담이며 간혹 地主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小作人이 이것을 부담하는 경우가 지배적이었다.

무엇보다도 封建的 現物地代의 존속・강화와 打租, 執租 및 定租法에 수반되는 小作料의 高率化는 봉건적 생산양식의 심화와 더불어 토지의 瘦薄化를 자초하는 결과가 되고 있었다. 환연하여 봉건적 고율지대는 농업경영의 부단한 減縮과 生產技術의硬化를 전제로 하고 그것은 小作人에 의한 토지의 자연적肥沃度의掠奪을 수반하는 토지의逐次的瘦薄化를 초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定租, 打租 및 執租 등의 小作料의 納付方式이나 그 밖에 강요된 지대적 부담을 빼침없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소작인의 家事勞役, 土地取得費 및 公課負擔 등 條件을 고려하여 살펴보는 자체가 중요하고 또한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小作料라 하지만 地主가 실제적으로 수납하는 현물 또는 현금에는 小作料 이외에 위의 부수적 諸負擔이 小作人에 대하여 부과되는 加重性을 발견하게 된다. 더욱이 지주의 土地兼併이 진행됨에 따라서 舍晉 등 中間榨取者의 착취관계 또한 가중적으로 보편화되었다는 점에 小作生產關係面에서 문제가 있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舍晉은 다름아닌 부재지주의 土地管理者이며 소작인의 中間榨取者인 존재이었으며 그들은 때때로 지주를 농락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 地主의 威勢를 빌어서 묘한 방법으로 小作人을 弄奸함이 일반적이었다. 그리하여 舍晉은 지주와 소작인의 중간에 있으면서 地主를 대신하는 권세를 악이용하여 小作人에게 苛歛誅求와 橫暴를 극심하게 하고 있었다 [朱奉圭(1980, p. 216)]. 그리하여 舍晉은 실로 農民榨取의 암적 존재가 아닐 수 없었으며 그것은 村落의 總督 혹은 村落의 惡鬼라는 호칭이 붙어있었다.

日帝下 地主에 대한 舍晉의 임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1921년 당시 舍晉의 임무를 살펴보면 [朝鮮農會(1930, p. 282)], (1) 小作料 収取, 保管, 運搬 및 賣却, (2) 納稅의代理, (3) 小作人의 監督, (4) 土地의 修繕, (5) 作物狀況의 報告 등이었다.

그 밖에도 1922년 당시의 舍晉의 임무 [朝鮮農會(1930, pp. 325-326)]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즉 (1) 土地事務에 관한 地主代理, (2) 小作人の 감독, (3) 小作人の 離跡, (4) 小作料의 查定, 徵收 및 보관, (5) 種子의 보관, (6) 地主와 小作人間의 연락 등이었다.

그리고 日帝下에서의 大地主 또는 원격지에 있는 지주는 舍晉을 각자에 배치하고 小作地의 관리에 임하게 하며 舍晉은 地方에 따라 大宅人 또는 農幕主人이라고 불리어지고 있었으며 平安道에 있어서는 小作人 가운데 신용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舍晉의 임무를 맡게하고 이들을 首作人이라 불렀으며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朝鮮總督府殖產局(1928, pp. 149~150)].

- (1) 小作料의 收取・管理 및 賣却
- (2) 小作人の 監督
- (3) 小作地의 改善
- (4) 租稅의 代納
- (5) 賞與資金의 貸付 및 地主・小作人間의 連絡

그러나 위와 같은 조항들은 대체로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舍晉의 終局의인 使命은 오로지 地主가 기대한 바의 일정한 小作料를 遺漏없이 확보함에 있었다. 그들의 사명은 地主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慾求를 小作人을 통하여 가장 충실히 이행・완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그들이 감행한 행패와 작간은 惡德地主의 소행을 훨씬 능가한 정도의 것이여서 이들의 小作料 중간착취량은 극도에 달해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舍晉의 존립이 小作關係에 악영향을 미치고 아울러 小作農民에게 害毒을 미치며 農業發展을 저해하는 조건이 되었음은 舍晉存立의 弊害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정표되어 있다. 즉 京畿地方의 舍晉弊害 [朱奉圭(1980, p. 126)]는 다음과 같다.

- (1) 私利私情에 의하여 합부로 小作人을 변경하는 일이 허다하여 小作地分配의 均衡을喪失케 하고 있다.
- (2) 小作人の 취급에 있어서 평소에 贈與物 기타의 情實에 의하여 差別待遇를 하고 있다.
- (3) 小作人은 私役에 服役케 하고 있다.
- (4) 小作料를 임의로 增徵하고 있다.
- (5) 地主의 歡心을 사기 위하여 小作人을 착취하며 학대하고 있다.

忠淸北道地方에서의 舍晉弊害 [朝鮮農會(1930, pp. 483~484)]로 指目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1) 管理土地 가운데 비옥한 土地를 자기 報酬畠으로 하고 不良地를 小作토록 하는 경향이 있다.
- (2) 小作權 移動을 남용하고 있다.
- (3) 小作料에 差額을 설정하여 (約定小作料 및 年量附) 利得을 보고 있다.

(4) 小作人에게 無償勞役을 강요하고 있다.

忠淸南道地方에서의 舍音弊害 [朝鮮農會(1930, p. 484)]는 다음과 같다.

(1) 私利私慾에 몰두 利慾을 자행하고 있다.

(2) 小作權 移動을 남용하고 있다.

(3) 小作人에게 각종의 雜役을 부과하고 있다.

(4) 地主에 대한 小作料를 不正하게 처리하고 있다.

한편 全羅北道地方에서의 舍音弊害 [朝鮮農會(1930, p. 485)]는 다음과 같다.

(1) 不正手段을 자행하고 있으며 私利를 도모하고 있다.

(2) 私用의 목적으로 小作人을 無償使役하고 있다.

그 밖에도 全羅南道地方에서의 舍音弊害 [朝鮮農會(1930, pp. 485~486)]는 다음과 같다.

(1) 부당하게 금품을 징수한다.

(2) 無償勞役을 課한다.

(3) 小作料를 增徵한다.

(4) 小作權을 慢意로 이동하는 行爲를 하고 있다.

또한 慶尙北道地方의 舍音弊害 [朝鮮農會(1930, p. 486)]는 다음과 같다.

(1) 小作料 納付의 경우 小作人으로부터 벼 1石에 대하여 7升 이상의 手數料를 取得한다.

(2) 執穗의 경우 酒食을 小作人에게 부담시킨다.

慶尙南道地方의 舎音弊害 [朝鮮農會(1930, pp. 486-487)]는 다음과 같다.

(1) 小作權을 자유로이 이동하고 있다.

(2) 私復을 위하여 小作人을 摧取하고 있다.

그리고 舎音의 弊害 [朝鮮農會(1944b, pp. 528~52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指目되고 있기도 하다.

(1) 小作人을 임의로 변경하고 자기의 親戚, 知己 등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小作人의 生活을 威脅하고 있다.

(2) 地主와 契約하는 이외에 고의로 小作料를 높이고 또는 小作料 徵收의 경우 고의로量을 增加시키고 있다.

(3) 徵收한 小作料를 매각하는 경우에 일정 場所까지의 運搬을 부담시키고 있다.

(4) 자기가 徵收한 小作料보다도 더 나쁜 벼를 地主에게 納付하고 있다.

(5) 小作料 徵收의 경우 各種各樣의 명목으로 小作人으로부터 金品을 수취하고 있다.

다른 또 하나의 舎音의 弊害에 대하여 指摘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田

邊勘正(1938, pp. 338~339)].

- (1) 小作料를 增加시키고 있다. 즉 小作料 收納量의 일정 부분을 報酬로서 支給받는 舍音은 報酬增加를 期하기 위하여 小作料를 增徵하고 있다.
- (2) 恣意로 小作人을 变경시키고 있다. 즉 不定期小作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더욱이 舍音에 小作契約의 解除權이 부여되어 있음으로써 그의 권한을 滥用하여 소작인의 贈與의 多寡에 의존하여 소작인을 变경하고 있다.
- (3) 農業發達을 저해하고 있다. 즉 小作人을 誅求하며 小作契約 解除의 불안을 주어 소작인의 土地改良, 기타 시설을 할 여유를 주지 않아 營農意慾을 滅殺시킬 뿐만 아니라 優良品種의 보급을 방해함으로써 농업발달을 스스로 저해하고 있다.

무릇 舍音은 小作料 이외에 소작인으로부터 手數料를 징수하며 贈與를 강제하고 있으며 小作人으로 하여금 私用의 無償勞動에 服役케 하는 실질상의 小作人 부담을 가중시켜 온 實在로서 小作人的 경제적 地位向上이나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가 되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이었다.

“朝鮮에 있어서 小作慣行 가운데 舍音은 癌的 存在로서 稱號되고 있었다”[朝鮮農會(1944b, p. 483)]는 것과 “舍音 기타 小作地管理者를 기초로 한 弊風은 심각한 것이었고 따라서 農地令 발포의 主要目的도 이 弊風의 교정에 있었으며 이 弊風은 朝鮮에 있어서 小作慣行의 癌的 存在이었다”[朝鮮農會(1944b, p. 655)]는 데서 그 영향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또한 “京城의 富豪는 그 대부분이 이른바 不在地主階級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 현상은 비단 京城에限한 것이 아니고 全朝鮮 各都市가 모두 大同小異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이를 不在地主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社會問題로서는 대개 세 가지를 들고 있으니 農村疲弊問題, 邑面財政不健全問題, 舍音制度에 의한 소작료 過重問題가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고 이상 3大弊害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요, 따라서 世人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문제는 역시 舍音制度에 의한 과중한 小作料 徵收問題이다. 舍音制度란 반드시 부재지주들로 말미암아 생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不在地主가 생긴 후로 그 수가 격증되었으며 또한 지주의 不在를 틀타서 그들이 더욱 橫暴를 慢行하는 사실은 默過하여도 좋을 정도가 아니거니와 원래가 舍音이란 小作人에 대하여 中間榨取하는 存在로 되어 있었다.……”⁽¹⁾

위와 같은 상황과 小作條件의 극단적인 불합리 속에서 小作農民의 悲鳴은 고조되었으며 그것은 마침내 小作爭議로 승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小作爭議는 小作料 減免을 비롯한 모든 小作條件改善을 요구하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탄생되었다.

(1) 朝鮮日報 1939年 4月 12日字 社說.

이에 日帝는 小作爭議運動의 전개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小作爭議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諸般方案을 강구하여 1927년에 전국 各道에 걸쳐 600戶의 自作農을 창설키로 하는 소위 自作農創設事業과⁽²⁾ 동년 12월에 小作爭議調停令을⁽³⁾ 發布하였고 1928년 3월에는 臨時小作調查委員會를 설치하고 小作慣行의 개혁안을 計劃樹立한 바 있었다. 즉 (1) 書面契約의 권장, (2) 小作料 인상 및 小作權 이동의 制限, (3) 小作地轉貸의 제한, (4) 繼續的 小作의 권장, (5) 小作權 상속의 보장, (6) 小作料 滯納에 대한 猶豫勸獎, (7) 定額小作料制의 實施勸獎, (8) 小作料運搬費 부담의 조정, (9) 約定小作料의 채정, (10) 金額의 弊害防止 등의 방책이 있었으나 사실 이것은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일편의 通牒에 의거한 수법의 것이었다. 따라서 당초부터 실효를 거두기 곤란하였던 방법이 있으며 그 후 各道에 小作官을 배치하여 小作紛糾의 調停을 극복하는 방안을 추가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하나의 糊塗策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나 方案講究로써 小作爭議의 원인을 業除하고 사태를 근본적으로 구할 수는 도저히 없었던 것이다.

3. 小作爭議運動의 展開

小作爭議運動은 1920년에 남부지방에 있어서의 小作料의 減額要求 또는 運搬費의 인하요구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된 쟁의를 단서 [朝鮮農會(1944b, p. 525)]로 하여서 최초로 그 면모를 나타내게 되었고 그 후 그것은 연차를 거듭함에 따라 뚜렷이 확대전개되었다.

〈表 3〉 年度別 小作爭議發生件數

年 度	件 數	年 度	件 數	年 度	件 數	年 度	件 數
1920	15	1925	204	1930	726	1935	25, 834
1921	27	1926	198	1931	676	1936	29, 975
1922	24	1927	275	1932	300	1937	31, 799
1923	176	1928	1, 590	1933	1, 975	1938	22, 596
1924	164	1929	423	1934	7, 544	1939	16, 452

資料：朝鮮總督府農林局(1940, pp. 5~6)

- (2) 自作農創設事業計劃이란 農村經濟更生의 實績을 舉揚코져 함에 目的을 두고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 이것은 自作農의 減額을 防止하며 兼하여 農村思想의 善導를 기하고자 하는 의중에서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
- (3) 朝鮮小作調停令은 日本의 同類法에 근거하여 대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것이었다. (1) 地主, 小作人間에 小作料 其他小作에 관한 爭議를 보았을 때 當事者の 신고에 의하여 법원에서 調停하되 (2) 調停事件이 府郡島의 小作委員會에 附議시켜 조정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러한 措置를 取하여 결과를 보되 (3) 調停成立을 裁判上의 화해와 같이 취급하고 끝까지 調停을 보지 못하면 물론 民事訴訟이 될 수 있다. 司法機關이 民事의 調停에 나선 것은 韓國에 있어서 이 小作爭議 처리의 嘴矢라 할 수 있고 실제 상당한 件數의 처리를 본 바 있었다.

〈表 4〉小作爭議原因別 發生動態

原因別 道別	小作權 王亡 小作地 關係						小作料 關係		
	小作權 認	小作權 繸	小作權 繢	土地明渡	其 他	計	小作料 一時的減免	小減 作料 免	小作料 滯 納
京畿	4	607	5	33	4	653	27	3	3
忠北	62	791	41	29	17	940	83	12	7
忠南	177	732	70	104	25	108	29	9	57
全北	249	485	234	37	22	1,027	159	20	1
全南	231	1,774	321	159	24	2,509	473	196	349
慶北	586	862	152	34	109	1,743	61	31	167
慶南	320	869	320	68	18	1,595	222	68	43
黃海南	35	594	16	11	5	661	65	28	9
平海南	333	619	36	113	36	1,137	235	29	3
平南北	10	518	1	18	—	547	4	52	18
江原	72	710	152	14	10	958	22	67	6
咸南	142	200	57	4	—	403	28	125	5
咸北	—	—	—	—	—	—	—	—	—
合 計	2,221	8,761	1,405	624	270	3,281	1,411	617	668
%	13.5	53.3	8.5	3.8	1.6	19.9	8.6	3.8	4.1

原因別 道別	小作料 關係				諸費用 負擔				其他	總 計	
	小作料 引上	小作料 決定方法 變更	其 他	計	公租公課	用水費	特殊費用負擔關係	其 他	計		
京畿	3	3	1	44	—	—	2	—	2	1	700
忠北	—	2	—	104	—	—	—	—	—	—	1,044
忠南	8	8	3	184	—	2	3	—	5	—	1,227
全北	2	—	—	182	—	6	—	—	6	—	1,215
全南	29	6	4	1,057	—	36	—	1	37	5	3,908
慶北	5	25	8	300	—	21	2	22	45	1	2,089
慶南	15	7	3	358	2	—	1	—	3	—	1,956
黃海南	14	1	—	117	1	—	4	—	5	—	783
平海南	31	13	—	311	10	5	23	—	38	—	1,486
平南北	26	3	—	76	—	—	3	—	3	—	606
江原	34	15	—	144	—	—	—	—	—	—	1,102
咸南	4	1	4	167	3	2	31	10	46	—	616
咸北	—	—	—	—	—	—	—	—	—	—	—
合 計	171	84	23	2,974	16	72	69	33	160	7	16,452
%	1.0	0.5	0.9	18.1	0.2	0.4	0.4	0.2	1.2	0.1	100.0

資料：朝鮮總督府農林局(1940, p. 525).

1920년 당초에 15건에 불과하였던 小作爭議가 요원의 불길과 같이 전국적으로擴散波及되어 1923년에는 176건에 달하게 되었고 1937년에 이르러서는 31799건의 기록을 보이는 가운데 農民運動의 일환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니 그 규모와 원인에 따라서 구구한 樣態로 消長을 보였다(表 3)。

이와 같이 小作爭議는 당초 일부 地域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그 후 점차 전국에 擴散·蔓延되어 하나의 農村社會運動으로 부각되었다. 물론 그 内容도 적지 않은 深刻性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 원인별 동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小作權 또는 小作地關係가 소작쟁의의 최대원인이 되어 있으나 그 가운데 小作權 이동의 반대 즉 小作權 계속을 위한 爭議原因이 주축이 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더욱이 小作權 移動으로 발생한 小作爭議가 1928년 4월 한 달 동안에 무려 9건이나 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뚜렷이 알 수 있거니와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신문기사에 의하면 小作權 移動에 대한 불만이 마침내 地主를 殺戮하는⁽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동시에 地主 집에 放火하는⁽⁵⁾ 사건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 小作人의 自殺⁽⁶⁾ 驚動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그것의 심각성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무엇보다는 小作權의 잦은 이동에 대해 小作人們은 小作組合, 農會 등을 통하여 小作權 보장을 주장한 바 있었고 이들은 공인되는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契約解除에 絶對的으로 不應할 것을 요구하며⁽⁷⁾ 小作能率을 위하여 期間은 最小限 5년 이상으로 할 것을 주장한⁽⁸⁾ 바 있었다.

〈表 5〉 小作爭議內容中 小作權移動에 關한 度數表

道 別	件 數	比 率(%)	道 別	件 數	比 率(%)
京 縣	7	5.7	黃 海	16	13.1
忠 北	5	4.1	平 北	4	3.3
忠 南	10	8.2	平 南	9	7.4
全 北	7	5.7	江 原	2	1.7
全 南	32	26.2	咸 北	7	5.7
慶 北	6	4.9	合 計	112	100.0
慶 南	17	14.0			

資料：東亞日報 1922年 5月 29日字부터 1933年 5月 30日字까지의記事를 中心으로 作成된 것임。

(4) 東亞日報 1925年 6月 28日字 參照。

(5) 東亞日報 1928年 2月 15日字 參照。

(6) 東亞日報 1932年 1月 13日字 參照。

(7) 東亞日報 1924年 1月 24日字에서 同 1933年 5月 30日까지 모두 21件。

(8) 東亞日報 1924年 1月 24日字에서 同 1933年 5月 30日까지 小作能率向上을 위한 소작기간의 最小限度는 5년 이상으로 할 것을 주장한 農會·小作組合에 관하여 언급된 新聞記錄만도 모두 19

앞의 〈表 5〉는 道別로 살펴본 小作權 移動에 관한 도수표이거나와 이 도수표에서 경작지가 많고 日本人營農會의 農場이 있는 곳에서 유독 小作權의 이동이 심하였고 더욱 이것을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全羅南道의 경우 전체의 26.2%, 東拓所有地가 많은 黃海道의 경우 13.1%로서 小作權 移動의 원인에 따른 小作爭議 發生의 징표를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全羅南道의 荷衣島, ⁽⁹⁾ 梅花島, ⁽¹⁰⁾ 都草島, ⁽¹¹⁾ 慈恩島, ⁽¹²⁾ 智島 ⁽¹³⁾ 그리고 岩泰島 ⁽¹⁴⁾ 등의 島嶼地方에서 발생된 소작쟁의는 모두 소작권 이동이 그 주된 원인인 가운데 전개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小作權 移動을 쟁점으로 하여 小作爭議運動이 이뤄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平安南道의 경우 전체의 7.4%가 小作權 移動原因에서 거의 비롯되고 있었는데 그 경우 그것은 龍川不二興業株式會社 西鮮農場 小作人과 農場主 사이의 小作權에 대한 갈등과 불화에서 빚어진 것이었고⁽¹⁵⁾ 그 기간은 1925년 對羅面 小作爭議에서 1932년 龍川小作組合의 해체시까지 걸쳐서 무려 8년간이나 지속된 [趙東杰(1979, pp. 126~132)] 것이었으며 또한 鳳山郡과 戴寧郡 등 東拓所有地가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는 黃海道地域에서의 小作爭議 [權斗榮(1978, pp. 171~179)] 역시 東拓이 계약만료후 소작권 갱신시 耕作期에 있는 小作權을 박탈하여 日本移民에게 이동시킨 小作權 移動에서⁽¹⁶⁾ 역시 비롯되고 있었다.

小作權 移動을 쟁점으로 한 小作爭議運動 전개에 이어 高率小作料에 따른 小作料의 低減要求 및 減免要求가 또한 소작쟁의 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었다. 대개의 경우 小作料는 전체 收穫高의 50% 내외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公課金諸稅 등을 포함하면 60~70%를 훨씬 넘는 고율의 것이었다. 따라서 小作人們은 小作料를 平年作인 경우 수확고의 40%⁽¹⁷⁾ 내지 50%⁽¹⁸⁾ 선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아울러 현재 실시되고 있는 小作料率이 50%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한 小作料 引下를 요구하는⁽¹⁹⁾ 등 강경하게 맞서는 가운데 마

件임.

- (9) 東亞日報 1928年 2月 19日~27日字 參照.
- (10) 東亞日報 1928年 9月 20日~30日字 參照.
- (11) 東亞日報 1925年 10月 28日字 參照.
- (12) 東亞日報 1925年 10月 28日字 및 同年 8月 21日字 參照.
- (13) 東亞日報 1925年 3月 17日字 및 同年 4月 27日字 參照.
- (14) 新東亞 1969年 9月號 “岩泰島 小作爭議件” 參照.
- (15) 東亞日報 1929年 4月 23日字부터 1932年 11月 9日字까지 모두 15件임.
- (16) 東亞日報 1924年 11月 6日字부터 1931年 3月 27日字까지 모두 141件이 言及되어 있었음.
- (17) 東亞日報 1922年 9月 9日字부터 1932年 3月 18日字까지 小作權 確立에 관한 기사中 小作料 40%를 주장하는 관련기사는 모두 23건에 달하고 있었다.
- (18) 小作料를 최고 50%까지 주장하는 기사는 東亞日報 1925年 2月 14日字부터 1931年 12月 14日字까지 모두 12건으로 되어 있다.
- (19) 小作料減免要求의 대표적인 소작쟁의는 務安郡과 報恩郡의 소작쟁의, 梁山郡 東拓小作人 중심의 抗爭, 慶南의 固城郡學林·永縣 소작쟁의, 戴寧郡北栗 소작쟁의, 凤山郡 舍人小作爭議, 그리고 龍川郡 不二農場所在地에서의 小作人們의 항쟁 등이 있었다.

침내 小作爭議運動으로 昇華되었다.

이렇게 볼 때 小作權 移動의 반대와 小作料의 低減要求가 小作爭議의 주된 원인인 가운데 전개되었던 것을 알 수 있으나, 그것은 小作權 繼續의 쟁의와 小作期間의 短期化問題와 깊이 관련되어 나타났던 것을 또한 알 수 있다. 즉 小作期間은 地主와 친척관계를 갖는 小作人이라든가 또는 과수원 등을 경영하는 小作人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1년이 通例가 되어 있었고 이 1년간을 小作期間으로 하는 비중은 전체의 70%를 상회하고 있었다(表 6)。

그리고 日帝下 小作期間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道別로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朝鮮總督府(1930, pp. 180~185)].

- (1) 京畿道의 경우 : 3~5년이 일반적이었으며 20~30년을 동일한 토지에서 소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地主・小作人間의 상호 利害關係로 인하여 1~2년으로 그 기간이 점차 短縮되는 상황에 있었다.
- (2) 忠淸北道의 경우 : 小作期間이 정해지지 않고 地主의 의사에 따라 수시로 契約이 解除되고 있었다. 報恩과 丹陽郡 일대에서는 1년으로 기간이 약정되어 있어서 매년 계약을 更新하고 있었다.
- (3) 忠淸南道의 경우 : 口頭契約은 期間의 규정이 없고 地主・舍晉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었다. 證書契約은 보통 3~5년으로 규정하고 畢은 3~6년, 田은 畢보다도 길지 만 기간중이라도 小作人이 불성실하면 小作權은 언제든지 移動되는 상황에 있었다.
- (4) 全羅北道의 경우 : 최하 1년, 보통 3~5년이며 긴 것은 2~3대까지 계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 (5) 全羅南道의 경우 : 最短 1년, 보통 3년이며 最長 5~10년이나 地主・舍晉의 任意에

〈表 6〉 小作期間의 實態

項 目	1年間	2~3	4~5	6~8	9~10	11~15	16~30	30年 以上
地 主	20	1	1	—	—	—	—	—
	3	1	—	—	—	—	4	—
自作地主小作	116	23	8	1	1	1	4	—
	41	1	3	1	6	1	—	—
小 作	110	24	17	1	2	1	7	—
	34	9	16	1	1	2	—	—
	13	—	4	—	—	—	—	—
計	327	59	49	4	10	5	11	—

資料：朝鮮銀行(1935).

의해 契約은 지속되기도 하였다.

- (6) 麻尙南道의 경우 : 最短 1년, 보통 3년, 最長의 경우 5년이며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 狀態에서는 最短 1年, 보통 10년, 길면 數代를 계속하여서 소작하기도 하였다.
- (7) 黃海道의 경우 : 最短 1년, 긴 것은 지역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되어 있었다. 載寧地
方은 50년, 海州·鳳山·瑞興地方은 30년, 近白地方은 24년, 新淡 및 長淵地方은 10년,
安岳 및 信川地方은 대개 5년이고 地主 또는 舍晉에 의해 小作權이 이동되고 있었다.
- (8) 平安南道의 경우 : 最短 1年, 보통 3년 最長 4~5년으로 하고 地主·小作人の 상호충
돌이 없으면 永小作도 가능토록 되어 있었다.
- (9) 平安北道의 경우 : 最短 1년, 보통 3~5년이고 10년이 일반적이며 그 이외의 규정은
平安南道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 (10) 江原道의 경우 : 最短 1~3년, 보통 3~5년이며 10년 이상은 永小作할 수 있었다.
- (11) 咸鏡南道의 경우 : 普通 1~4년이며 특별히 播種期 以後에 地主가 바뀔 때에는 당해
만 耕作權을 이동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원상대로 회복하는 것이었다.
- (12) 咸鏡北道의 경우 : 보통 1년이나 契約滿了後 재계약을 함으로서 실제적으로는 永小
作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듯 小作期間의 경우 小作人の 영농정착에 흡족한 小作期間의 長期化 측면에서 보다는
短期化 측면에서 구체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바로 小作期間의 短期化問題가 小作爭議
의 쟁점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小作期間도 定期보
다는 不定期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不定期 및 定期別 小作期間의 경우 菜園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50.2% 대 49.8%로 되어
있고 畑과 田에 있어서는 각각 81.0% 대 19.0%, 79.7% 대 26.3%로써 不定期小作이 지
배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小作權 移動은 심각한 문제였으며 이것이 바로 小作爭議運動
의 쟁점이 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表 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小作爭議 전개는 小作權 移動의 반대 즉 小作權 계속을 쟁점
으로 한 소작쟁의를 비롯하여 高率小作料에 따른 小作料의 低減要求 및 減免要求를 쟁점으

〈表 7〉 不定期 및 定期別 小作關係

(單位 : %)

區 分	畠	田	菜 園
不 定 期 小 作	81.0	79.7	50.2
定 期 小 作	19.0	20.3	49.8

資料 : 田邊勝正(1938, p. 233).

로 한 소작쟁의가 주된 것이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으나 日帝下 小作爭議를 좀더 차원을 높혀 살펴보면 第1次 世界大戰 이후 당시에 급격하게 팽창되고 있던 民族自決思想과 社會思想意識의 일반적인 발전과 깊이 관련된 近代的인 小作爭議運動으로 전개된 바 없지 않았고 또한 농민의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組織團體를 모체로 한 闘爭運動으로 昇華된 바 있었음을 간파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1922년 서울에서 결성된 小作人相助會를 필두로 하여 전개된 小作爭議運動은 朝鮮農民總同盟 그 밖에도 각 지방에 조직된 小作人組合이 모체가 되어 實質化된 것이라는 데에서 그 실상을 알 수 있으며 忠北의 小作人相助會가 제시한 要求條件의 내용 [朝鮮農會(1944b, p.532)]을 살펴보면 더욱 뚜렷이 그것을 알 수 있다.

- (1) 地稅, 기타의 公課는 전부 地主負擔으로 할 것
- (2) 小作料는 절반으로 할 것
- (3) 小作料의 收納計劃方法을 개정할 것
- (4) 小作年限을 연장케 할 것
- (5) 小作人の 小作料運搬距離를 단축토록 할 것
- (6) 小作地 修理費의 小作人負擔을 경감할 것
- (7) 舍晉 그 밖에 小作管理人の 斗稅 및 無償勞動要求를 폐지할 것
- (8) 地主는 非常識的인 舍晉을 사용하지 말 것
- (9) 天災地變에 의한 토지의 復舊費는 地主의 부담으로 할 것

또한 全南 順天郡 雙岩面에서는 1922년 12월 20일에 小作農民 1000여명이 面事務所에 운집하여 다음과 같은 要求條件을⁽²⁰⁾ 제시하면서 그것의 관철을 고집하였다.

- (1) 수확은 地稅, 公課金과 모든 農事費用을 除하고 地主, 小作人이 半分할 것
- (2) 小作權을 함부로 移動치 말 것
- (3) 小作人에게 勞賃支拂의 대가없는 노동을 사역치 말 것
- (4) 小作料의 운반은 1里 이내로 할 것
- (5) 天災地變으로 인한 비용은 地主가 부담할 것

그 밖에 慶尙南道의 朝鮮小作人相助會에서 제시된 要求條件內容 [朝鮮農會(1944b, pp. 531~533)]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小作人の 人格을 존중할 것
- (2) 小作料를 減免할 것

(20) 東亞日報 1922年 12月 26日字 參照.

- (3) 舍音制度를 撤廢 또는 개선할 것
- (4) 中間小作을 폐지할 것
- (5) 小作期間을 연장할 것
- (6) 肥料에 대한 補助를 시행할 것
- (7) 小作權의 安定을 도모할 것
- (8) 地稅公課는 地主負擔으로 할 것

1922년에 黃海道의 凤山郡 西鍾面 興壽里와 東屯里에서는 小作人과 農監간에 충돌사건이 발생되었던 것이며 특히 東屯里와 津曲里에서는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凤山郡廳에 몰려가 흥작에도 불구하고 小作料를 징수하려 하고 있으니 생계에 위협을 받아 생활에 困苦를 느끼게 된다는 진정과 더불어 그에 대한 대책을 講究・措處하여 달라는 要求條件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²¹⁾

1922년 11월에 京畿道 水原郡 鄉南面에 있는 東洋拓殖株式會社 小作人們이 農監의 橫暴에 대하여 連署로 고발한 사건이 ⁽²²⁾ 있었으며 1922년 12월에는 忠淸北道 槐山郡內의 小作農民들이 각각 小作人組合을 결성하고 공과금의 地主負擔, 小作料의 1里 이상의 운반은 地主가 부담도록 할 것이며 2毛作의 수확물에 대해서는 小作料를 징수치 말 것 등의 요구조건을 ⁽²³⁾ 제시하면서 小作爭議를 야기하였다.

또한 1923년에 격심하였던 小作爭議 가운데 일례를 들어보면 1923년 10월 21일 慶尙北道 榮州郡 豊基의 小作組合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동태는 소작쟁의의 爭鬥的運動 및 階級的 대립운동의 表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注目對象이 되고 있다. 즉 豊基의 小作組合은 豊基勞動共濟會館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결의한 바 있었는데, 一般會衆은 극도로 緊張하여 今秋에는 기아이 목적을 관철하도록 奮鬥努力하고자 더욱 단결을 공고히 하기로 맹세하였다는 것으로, 결의내용은,

- (1) 地稅는 전부 小作料 5할 이상을 절대 不應할 事
 - (2) 地主가 우선 무리하게 小作權을 이동할 시는 一般小作人은 결속하여 小作權 擁護를 주장하고 어떠한 小作人이든지 경작치 말 것
- 등의 ⁽²⁴⁾ 강경한 태도의 것이었다.

1923년 春節에는 順天郡 樂安面과 海龍面, 黃田面 등등에서 지주들의 부당한 小作權 移

(21) 東亞月報 1922年 4月 25日字 및 9月 19日字 參照.

(22) 東亞日報 1922年 11月 20日字 參照.

(23) 東亞日報 1922年 12月 26日字 參照.

(24) 東亞日報 1923年 10月 21日字 參照.

動에 항의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黃南面에서는 소작농들이 지주에게 빼앗긴 小作權을 강제로 회복할 목적으로 德材里, 月山里, 船邊里, 回龍里 등지에서 집단적으로 共同苗床을 만들고 共同播種을 함으로써 抵抗意志를 행동으로 표시한 바 있었다. ⁽²⁵⁾

그리고 1923년 가을에는 順天郡 雙岩面, 西面, 順天面 및 海龍面 등지에서 지주들이 小作料를 부당하게 많이 징수하는 데 대항하여 小作料 不納同盟 및 小作料 留保同盟 등을 결성하여 투쟁하였다. ⁽²⁶⁾ 특히 順天郡 西面의 경우는 4월 順天郡 農民聯合會를 창립하여 小作料를 4할 이내로 할 것을 결의한 아래 많은 地主들이 이 결정에 順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地主들이 계속하여 4할 이상의 많은 小作料를 요구하는 데 반발한 많은 小作農民들이 모임을 갖고 小作料를 4할 이내로 재조정하지 않는 한 小作料 納入을 거부할 것, 小作料의 斗量은 지주나 지주대리인의 입회 하에 하되 一般小作人이 함께 입회할 수 있는 小作人의 洞里에서 할 것 등의 결의를 다짐하면서 地主에 대항한 바 있었다. ⁽²⁷⁾

또한 1923년 6월 全州에서는 全州小作人相助會가 중심이 되어 小作權 移動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는데 200여 농민들이 公會堂에 모여 투쟁 방법을 논의하고 小作權喪失乞人團을 만들어 각 지주의 집을 집단적으로 방문하여 행동하였고 地主 주택을 찾아간 200여 農民들은 경찰의 제지로 수 시간 동안이나 육신자신하다 해산한 사건이 있기도 하였다. ⁽²⁸⁾ 그리고 全北 益山郡에서 1923년 5월 18일에 200여명의 小作人이相助會 임시회관인 裡里天道教教堂에 운집하여 小作權 回復을 위한 籠城鬪爭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²⁹⁾

1923년 1월에 黃海道 安岳郡 大原面 농민 800여명이 小作權 이동에 반대하는 陳情運動을 전개한 바 있었으며 ⁽³⁰⁾ 10월에는 龍門面에서 종래의 永賭租를 打作制로 하겠다는 地主의 요구에 반대하는 쟁의가 전개되기도 하였다. ⁽³¹⁾ 그리고 1923년 3월에는 또한 凤山郡 舍人面에서도 일부 농민들이 小作權을 박탈당한 데 반발하여 소작권을 약탈당하지 않은 一般小作人們까지도 그 地主가 小作權 移動을 취소하지 않는 한 그 지주의 土地에 대하여 소작하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서 투쟁을 전개시킨 바 있었다. ⁽³²⁾

1923년 3월에 忠南 大田郡 外南面에 있는 小作農民들이 地主가 地稅를 징수키 위하여 집

(25) 東亞日報 1923年 5月 7日字 參照。

(26) 東亞日報 1923年 10月 15日字 參照。

(27) 東亞日報 1923年 10月 23日字 參照。

(28) 東亞日報 1923年 6月 9日字 參照。

(29) 東亞日報 1923年 5月 18日字 參照。

(30) 東亞日報 1923年 1月 4日字。

(31) 東亞日報 1923年 10月 25日字。

(32) 東亞日報 1923年 3月 28日字。

합한 장소에서 일제히 地稅의 地主負擔을 요구하는 시위를 감행한 바 있었으며⁽³³⁾ 忠南論山郡에서는 6월 이양시기에 小作權의 이동을 요구하는 地主의 요구를 반대하는 爭議를 일으켜 그것을 관철시킨 바 있었다.⁽³⁴⁾

1923년 1월 8일에 順天郡 住地面에서도 500여 소작농민이 회합하여 소작총회를構成・發動하고⁽³⁵⁾ 동년 11월에는 順天郡 外西面의 소작농민들은 농민대회의期成會를組織結成하였으며⁽³⁶⁾ 동년 동월 14일에는 同郡 西面의 소작인들이 農民大會創立總會를 가진 바 있었다.⁽³⁷⁾ 그리고 같은 날 同郡 東草面 소작인들은 寶城郡 筏橋里의 소작농민과 더불어 1500여명의 농민들이 운집하여 聯合小作人相助會를 조직하였으며⁽³⁸⁾ 2월 7일에는 同郡 松光面 소작농민들 500여명이 운집하여 小作總會를 결성한 바 있었다.⁽³⁹⁾ 특히 順天郡內의 각 면에서 小作農民의 組織이 확장됨에 따라 1923년 4월 19일에는 順天郡 農民會의 聯合會가 결성되어 총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⁴⁰⁾ 결의하고 그 후 조직적인 투쟁을 推進・展開시킨 바 있었다.

- (1) 地稅를 반환치 아니한 地主의 氏名을 本月 27日內로 本聯合會로 보고할 事
- (2) 地稅를 推尋할 위원을 각面別로 2명을 선정하여 27일에 協議派遣케 할 事
- (3) 無過失 小作移動에 대하여서는 각面에서 처리하되 거기서 處理不能할 시에는 즉시 本聯合會에 통지할 事
- (4) 無過失 耕作된 新小作人에게는 播種, 施肥 등 無用을 하지 말도록 각 主要處에 광고를 우선 粘附할 事

그 밖에 1923년 봄에 忠北 槐山郡에서 소작인조직이 활발하게 전개된 바 있었다. 그것은 進豐面, 長進面, 七星面, 甘旬面 및 沼尋面 등 6개면에서 小作人組合를 결성하고 3월 15일에 2000여명의 소작농민이 참가한 가운데 農民大會를 개최하여 소작농민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고 그들의 要求條件를 제시하여 그에 대한 결의를 촉구한 바 있었다.⁽⁴¹⁾

1924년에 있어서 小作爭議運動은 全羅道에서는 順天地方과 아울러 光州地方 및 求禮地方에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된 바 있었다. 光州郡 牛魄面에서는 1924년 1월 지주들이 小作權

(33) 東亞日報 1923年 3月 19日字 參照。

(34) 東亞日報 1923年 6月 4日字 參照。

(35) 東亞日報 1923年 1月 24日字 參照。

(36) 東亞日報 1923年 1月 26日字 參照。

(37) 東亞日報 1923年 1月 29日字 參照。

(38) 東亞日報 1923年 1月 30日字 參照。

(39) 東亞日報 1923年 2月 7日字 參照。

(40) 東亞日報 1923年 4月 27日字。

(41) 東亞日報 1923年 3月 23日字 參照。

을 약탈하여 다른 세로운 小作人에게 부여하고 사전에 공과금을 받으려 하였기 때문에 小作權의 무리한 이동에 격분한 700여 농민들이 1924년 4월 2일 光州小作人聯合會에 운집하여 일시에 소동이 발생될 듯한 처지에 까지 놓이게 되었으며 드디어는 小作人會에 의한 強制共同耕作을 결정한 사건도 있었다.⁽⁴²⁾

求禮郡에서는 1924년에 土旨面, 馬山面, 內山面 및 外山面 등지에서 小作權 移動을 반대하는 쟁의가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 소작농민들은 소작권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共同苗床, 共同施肥 및 共同移秧 등으로 집단적인 共同小作을 강행한 바 있었다.⁽⁴³⁾

1924년에 小作爭議運動이 慶北地方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특히 安東郡 豊山 小作人會와 榮川郡의 豊基小作組合의 활동은 매우 활발하였다. 安東郡 豊山小作人會는 1924년 4월에 악덕 지주와의 쟁의 때문에 春耕을 하지 못한 會員小作人을 위하여 後援糧救援를 거두어주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7월에는 春收作物의 소작료는 2할 이내로 하고 秋收作物은 畠 4할, 田 3할 5푼으로 하기 위한 투쟁을 맹렬히 전개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春收作物 小作料 2할 이내 조건을 위하여 투쟁하던 농민의 소작권을 약탈한 地主가 있어 이에 대항하여 농민들이 공동으로 強制小作을 위한 農耕作業을 하다가 업무방해죄의 명목으로 검속된 사건도 있었다.⁽⁴⁴⁾

黃海道地方에서는 1924년에 水害旱害 및 蟲害 등의 재해로 말미암아 수확이 平年作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년과 똑같은 小作料를 납부하라는 것에 대하여 載寧郡 北栗面 일대의 농민들이 소작료를 그렇게 많이 납부하고서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므로 이것을 減下하여 주지 않는다면 小作料를 낼 수 없다고 小作料不納同盟을 일으키고 東拓出張所 들에서 매일 수 백명이 운집하여 그들의 要求貫徹을 간청하게 되었다.⁽⁴⁵⁾

東拓出張所側에 대하여 소작농민이 要求貫徹을 간청한 전에 대해 東拓出張所側이 그것은 本社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자기들로서는 적절하게 조처할 수 없다는 구실하에 농민들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자 小作農들은 10월 30일 밤 載寧江을 건너 沙里院에 있는 東拓支社로 몰려가서 농성투쟁을 전개하였는데 당초에는 200여명의 농민들이 東拓支社 앞뜰에서 농성에 돌입하였으나 회사측은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小作料를 收納치 않으며 小作權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하며 또한 日本人移民을 시켜 小作農의 小作地에 재배되어 있는 벼를刈取하고 小作農의 집에 있는 벼에는 ‘東洋拓殖會社’라는 名義標의 貼附로써 맞섰다.

(42) 東亞日報 1924年 4月 14日字 參照.

(43) 東亞日報 1924年 8月 17日字 參照.

(44) 東亞日報 1924年 10月 9日字 參照.

(45) 東亞日報 1924年 11月 1日字 參照.

한편 沙里院 支社 앞뜰에 모여든 농민들의 기세가 조금도 꺾이지 아니하고 형세가 혐악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東拓은 이에 대한 수습책으로서 小作料의 公平賦課를 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농민들은 농성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農民들의 흥분이 절정에 달하게 되었고 이에 農民들은 다시 농성에 들어가 500여 農民들이 餓餓를 감수하면서 최후의 회답을 요구하였다. 그 밖에도 農民들은 진정서를 京城에 있는 東拓本社와 朝鮮總督府에 송부하고 그에 대한 교섭을 진행시킨 바 있었으며 당시에 제시된 진정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朱奉圭(1982, pp. 71~72)].

우리 小作人們의 억울한 事情을 陳情하옵는 바에 의하면 불가불 현상을 일일이 들어陳謝치 않을 수 없읍니다. 슬프의다. 우리들의 과거 역사를 추억하면 참으로 悲憤의感을 금할 수 없읍니다. 해마다 小作權剝奪과 社員의 무리한 橫暴와 扈說의 사건은 非一非再하였던 바 생명과 재산을 모두 東拓會社에 의지한 一般小作人은 아무리 억울한 마음과 悲憤의 눈물은 誠所難抹이오나 小作地 強制解散함을 畏懼하여 우리의 悲運을 恨嘆하면서 儻儻히 糊口를 하옵삽드니 於是乎 年年히 極慘한 水害를 당할 뿐 불행으로 旱災와 蟲災를 당하였으니 어찌 雪上加霜이 아니랄까. 우리의 生計難餘는 世人이 共知하며 당국에서도 實地 踏查하심은 伏感謝不勝하옵나이다. 그러나 東拓 北栗駐在所에서는 今番 소작료의 불공평한 조정으로 小作人된 우리는 热沸한 感慨를 不堪하와 如此한 頗未을 당국께 호소하옵나이다. 例하오면 소작료 納入告知書 發布된에 의하여 應하오면 小作畠에서 수확할 것을 전부 납입할지라도 부족되는 소작인이 多有하온데 이것을 불문하고 當駐在所에서는 사원이 매일 출근하여 일반소작인에게 稻拔하는 穀食을 위협으로 꼬리표를 붙이며 혹은 강탈하여 組合長處에 보관하며 甚하여서는 위협으로 구타를 하면서 가혹한 橫暴를 하고 作農한 穀食에는 一切 소작인에게 권리를 许치 아니 하오니 此에 促하여 債權人의 獨 촉은 尤甚하와 自家에서 숙식을 安過할 수 없으므로 우리들은 死且不避로 不得己 當局되는 沙里院 東拓支店에 가서 革坐露宿으로 咨嗟彷徨하면서 다일간 억울한 사정을 支店長에게 陳述하고 哀願伏은 하였으나 于今껏 하등의 要求에 효과가 없으므로 우리들이 요구하는 다음의 조건을 전정하오니 伏願 當局께 옵서 潤轍之境에 陷한 우리들을 救極하여 주심을 伏願하나이다.

- (1) 今秋 發布된 小作料 納入告知書 액수에 의하여 4할, 5할 및 6할의 比率로 하고 그 이상은 면제할 件
- (2) 一指高斗 収納을 폐지할 件
- (3) 叱入收納을 폐지할 件
- (4) 貸付된 식량 및 비료대금은 5년보다도 俗還케 할 事
- (5) 15구역 소작인의 조합장은 전부 廢止할 件
- (6) 東拓會社 北栗駐在所 주임 이하 社員 4명을 전부 改選할 事

小作爭議運動 전개는 남부지방에 집중된 가운데 이뤄진 것이 아니라 북부지방에서도 그

運動展開는 적지 않게 있었으니 1924년 11월 5일 黃海道 凤山郡 舍人面에서는 소작인 200여명이 東拓 沙里院支社에 雲集하여 北栗面 소작인의 농성에 가세한 바 있었고 그들은 北栗面 小作人들이 해산한 뒤에도 支社長이 北栗面에서 돌아온 11월 12일까지 농성을 계속하였으며 그려는 가운데 그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⁴⁶⁾ 제시한 바 있었다. 즉

- (1) 소작료 납입고지서에 記載 調定高에 대하여 5할을 減할 事
- (2) 소작료 納入貫數는 正味 25貫으로 할 事
- (3) 소작료 繼臥法을 廢하고 종래의 葦俵로 할 事
- (4) 種穀과 비료대금은 3個年 年賊償還케 할 事
- (5) 소작인 總代를 폐지할 事
- (6) 定租契約을 종전의 수량과 如히 復舊할 事
- (7) 斗買入의 斗數料를 嚴禁할 事
- (8) 소작지를 보존하여 이민을 절대로 폐지할 事
- (9) 共同小作制度를 폐지 할 事

등이었다.

그리고 北部地方의 信川郡內의 加山面, 蘆月面 그리고 北部面 등지의 東拓 소작인들이 小作料의 減下, 小作權 移動 반대 등을 요구하는 쟁의가 도처에서 발생하였고 1924년 11월에는 信川郡 加山面의 東拓會社 소작농민들이 旱災, 蟲災 그리고 水災로 인하여 농작물의 수확이 4할 및 5할씩이나 減收되었는데 예년과 똑같은 小作料를 납입한다면 도저히 생활이 유지될 수 없으므로 小作料를 減下하여 달라고 不納同盟을 일으킨 바 있었다.⁽⁴⁷⁾

똑같은 1924년 2월 19일에는 黃州郡 일대에 있는 朝鮮興業株式會社의 小作農民들은 소작료의 인상의 취소하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朝鮮興業支社가 있는 黃州邑으로 雲集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길목에서 농민들의 集合을 저지하려 하였으며 小作人代表 劉采斗를 引致하여 부랑죄로 취조를 하여 그를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격분한 농민들은 黃州邑내에 집결하여 일대 시위를 전개한 바 있었고 그들은 會社側에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⁴⁸⁾ 提示하였다.

- (1) 小作料는 20년전의 소작료대로 받을 것
- (2) 그리고 그 후에는 더 增加치 말 것
- (3) 既히 執行된 分은 무조건 返納할 것

(46) 東亞日報 1924年 11月 10日字 參照.

(47) 東亞日報 1924年 11月 8日字 參照.

(48) 東亞日報 1924年 2月 3日字 參照.

- (4) 今年의 소작료는 5할로 減하여 줄 것
- (5) 小作料는 종래와 같이 豆類에만 한정하지 말고 그 밖에 栽培한 農作物로 할 것
- (6) 소작료는 風具에 調製되지 않는 상태의 것으로 수납토록 할 것
- (7) 둑는 그 전과 같이 그 위에 2, 3次나 오르게 하지 말 것
- (8) 小作人에 대한 인격을 지나치게 무시하지 말 것

우리는 바야흐로 위와 같은 기세로 전개된 1920년대 초기의 小作爭議의 性格에 관한 한 단순히 地主에 대한 小作條件의 改善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민족적인 反帝運動性格의 국면이 있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음도 사실이다.

小作爭議가 또한 勞動爭議와 깊이 연관을 맺고 連結을 가지면서 전개되었던 국면이 있음을 찾아볼 수도 있다. 그것은 곧 1920년 4월에 조직된 朝鮮勞動共濟會라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勞動階層만의 共濟的 단체가 아니라 小農民을 직접 참가시킨 투쟁적 조직이었다는 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1920년대 초기에 소작농민들이 자기의 권익을 機護增進하기 위하여 小作人組合, 小作人同盟, 小作人會, 小作人共濟會 및 農民會 등 각양각색의 명칭의 단체를 조직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朝鮮勞動共濟會였다.

朝鮮勞動共濟會의 地方支會가 小作人組織을 위하여 활동한 몇 가지의 실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朝鮮勞動共濟會 晉州大會에서는 1921년 9월에 있었던 釜山 埠頭勞動者들 5000여명의 大罷業과 또 이에 뒤따른 釜山, 影島方面 労動者들의 罷業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데 힘입어 小作農民들의 단결된 투쟁이 결실함을 깨닫고 1922년 3월에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小作問題를 인식, 우선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하도록 조사위원들을 선정하였으며 이 調查委員들은 小作農問題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며 區內 각지에서 회원의 흡수에 노력하고 夜間講習所 등을 통하여 계몽사업을 전개하였고 동년 9월 4일에는 1000여명의 小作人들을 晉州青年會에 모아서 小作勞動者大會⁽⁴⁹⁾ 개최의 성공을 빌기에 이르렀다.

이 晉州小作勞動者大會에서는 소작인의 단결을 촉구하기 위한 實況報告와 講演會를 가졌으며 드디어 여기에 참여한 농민들은 소작인 권리의 옹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決議案을 채택하기까지에 이르렀다 [朝鮮總督府警務部(1922, pp. 89~90)].

- (1) 종래의 指定小作料(定租)를 폐지 할 것

(49) 1922년 9월 11일자 東亞日報에서는 “小作勞動者大會 朝鮮에서 처음으로 晉州에서 개최”라고 보도하고 있다.

- (2) 소작료는 생 산의 折半 분배로 할 것
- (3) 地稅 및 附加稅는 地主負擔으로 하며 糸는 그 전부 소작인의 소득으로 할 것
- (4) 小作料의 운반은 지주의 所在地 1里 거리 내에서는 小作人 부담으로 하고 1里 이상 부터 地主負擔으로 할 것
- (5) 지주 및 舍晉 등에 物品贈與의 습관을 全廢할 것
- (6) 지주에 대한 無償勞役을 全廢할 것
- (7) 斗稅를 全廢할 것
- (8) 小作料 取得에는 斗斛을 사용할 것
- (9) 本決議 실행 및 調查를 위하여 共濟會支會내에 調查委員 20명을 두어 각面을 巡廻케 하고 소작인 대 지주간에 立會하여 실행케 할 것
- (10) 本決議事項에 위반하는 자는 相互扶助를 하지 아니하며 斷交할 것
- (11) 지주로서 本決議事項을 반대하거나 無過失의 소작인으로부터 소작지를 빼앗은 자와는 斷交 排斥할 것
- (12) 本決議는 금년 秋收期로부터 실시할 것

그 후 朝鮮勞動共濟會 晉州大會는 조사위원 20명을 다시 확대하여 실행위원회를 50명으로 하고 그의 組織事業을 적극화하였는데 농민들의 호응이 대단하여 지주의 가혹한 小作制度 아래서 苦痛으로 지나며 비참한 생활을 하던 小作人們은 어두운 밤에 鎚의 소리를 들은 듯이 사방에서 서로 응하여 晉州支會 全容分會와 같은 곳에서는 晉州小作勞動者大會가 있은 지 1주일도 못되어 1200호의 소작농이 모두 회원이 되었다고⁽⁵⁰⁾ 알려져 있다.

小作農民들의 團結活動이 위와 같이 顯著化됨에 따라서 지주들은 이에 대응하는 地主會를 개최하고 소작인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한 바 있었으며⁽⁵¹⁾ 官廳當局은 朝鮮勞動共濟會의 宣傳・組織活動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⁵²⁾

朝鮮勞動共濟會는 그 創立當時에 있어서는 주로 京城에 있는 진보적 지식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그 후 각 지방에 있는 勞動團體 및 小作人團體가 여기에 支部 또는 支會로 가담하였기 때문에 1922년 同會가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朝鮮勞動聯盟會로 되기까지에는 이미 15000여명 가량의 회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朱奉圭(1982, p. 75)] 거기에는 많은 小作農民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50) 東亞日報 1922年 2月 22日字 參照.

(51) 東亞日報 1922年 10月 20日字 參照.

(52) 東亞日報 1922年 2月 3日字 參照.

1922년 7월에는 朝鮮勞動共濟會 집행부가 소작인은 단결하라는 宣言文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朝鮮勞動共濟會 晉州支會가 9월에 小作人大會를 개최한 이래 전국의 소작인들은 급격히 단결을 굳게 하여 집단행동을 하며 단체를 조직하였거니와 이것이 1924년경에 와서는 점차로 지역적 연합을 형성하며 나아가 전국적인 연맹체의 결성을 촉구하게 되었다 [朱奉圭(1982, p. 75)].

1922년 10월에 尹德炳을 중심으로 한 朝鮮勞動共濟會의 주류는 그것을 해체하고 朝鮮勞動聯盟會로 개편하였으며 晉州勞動共濟會, 安東勞動共濟會, 그리고 甘浦勞動共濟會 등 많은 소작인조합을 가지고 있는支部가 이에 가담하고 있었다.⁽⁵³⁾

이것에 뒤이어 井邑勞動共濟會, 豊基小作組合, 清津勞動共濟會 등도 이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⁵⁴⁾ 그러므로 朝鮮勞動聯盟會는 朝鮮勞動共濟會에 뒤따른 朝鮮勞農運動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朝鮮勞動聯合의 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朱奉圭(1982, p. 75)].

첫째, 吾人은 사회역사의 必然한 進化理法에 의하여 新社會建設을企圖함.

둘째, 吾人은 공동의 힘으로 생활을 改造키 위하여 此에 관한 지식의 啓發 및 지식의 전보를企圖함.

셋째, 吾人은 現社會의 계급적 의식에 의하여一致團結을企圖함.

1923년 9월에는 朝鮮勞動聯盟會에서 朝鮮勞農同盟準備會를 구성하여 전국적인 勞動者・農民總團體를 구성하려 하였으며 [京城鍾路警察署(1923, p. 344)] 또한 朝鮮勞動聯盟會에 가담하지 않는 人士들에 의하여 朝鮮勞農大會準備會가 조직되어 [京城鍾路警察署(1923, p. 1259)] 노농운동이 두 갈래로 갈라진 듯한 인상을 주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 지방의 單位勞農團體들은 중앙에서의 분파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단결을 추구하였으니 그것이 1924년의 慶尙道勞農運動者懇親會, 全羅道勞農聯盟 및 南鮮勞動同盟 등의 결성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하였다 [朱奉圭(1982, p. 76)].

慶南勞農運動者懇親會는 1924년 1월 11일부터 3일간 晉州에서 60여의 勞農團體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⁵⁵⁾ 그리고 여기에는 晉州勞農共濟會, 光州小作人聯合會, 順天農民聯合會와 같은 農民團體의 연합체들이 慶尙道와 全羅道에서 참석하였으며 노동문제, 청년문제 및 여성문제들과 더불어 農民問題에 관하여서는 소작권 보장, 소작료의 4할 이내

(53) 東亞日報 1922年 10月 22日字 參照.

(54) 東亞日報 1923年 4月 29日字 參照.

(55) 東亞日報 1924年 1月 19日字 參照.

로의 減免 등의 문제가 결의되었으며 勞農團體의 전국적인 결속을 위해 우선 남부지방 일대의 勞農團體가 단결하여 南朝鮮勞農同盟을 조직하기로 發起總會를 가지기로 하였다.⁽⁵⁶⁾

全羅勞動聯盟은 1924년 3월 4일부터 이를 동안 光州 興學館에서 49개의 勞農團體 대표 100여명이 참석하여 創立總會를 개최하여 규칙과 선언문을 채택, 통과시키고 임원을 선출한 바 있었다.⁽⁵⁷⁾ 그 후 同聯盟은 加盟團體가 78개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朱奉圭(1982, p. 76)].

그리고 南鮮勞農同盟은 慶南勞農運動懇親會와 全羅勞農聯盟에 참가한 노동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남부지방 일대의 勞農團體의 단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創立大會는 1924년 3월 9일부터 2일간 大邱(제 1일에는 萬鏡館, 제 2일에는 大邱勞動共濟會館)에서 개최되었고 당시에 總加盟團體數는 141개 단체에 이르고 있었으며 채택된 紲領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우리는 단결의 힘으로 勞動階級의 해방을 期함。

둘째, 우리는 完全無缺한 사회의 실현을 期하는 동시에 刻刻의 福利增進과 생활향상을 도모함.

셋째, 勞動運動의 총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전국적 總團結의 결성을 期함.

그 밖에도 當時 創立大會에서 토의된 바 있었던 주요사항들을⁽⁵⁸⁾ 종합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勞農民의 相互關係에 대한 件
- (2) 各地方의 小作狀況調査에 관한 件
- (3) 각지의 小作團體·內容調查의 件
- (4) 소작단체의 조작에 관한 件
- (5) 異流小作團體에 관한 件
- (6) 소작조건에 관한 件
- (7) 소작인의 교양에 관한 件
- (8) 農業改良에 관한 件
- (9) 副業獎勵에 관한 件
- (10) 生산과 소비조합에 관한 件
- (11) 農村雇傭에 관한 件

(56) 東亞日報 1924年 1月 22日字 參照.

(57) 東亞日報 1924年 3月 8日字 參照.

(58) 東亞日報 1924年 5月 22日字 參照.

- (12) 東洋拓殖株式會社에 관한 件
- (13) 郡農會에 관한 件
- (14) 청년단체의 조직에 관한 件
- (15) 청년교양에 관한 件
- (16) 異流青年團體에 관한 件
- (17) 여성단체의 조직에 관한 件
- (18) 여성교양에 관한 件

동이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부터 勞動共濟會의 조직자체가 노동자와 소작농민의 組織結束을 강화하는 바탕이 되었으며 그들의 투쟁목적이 대부분 小作農民問題를 주축으로 하여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그리므로 日帝下 小作爭議運動은 일단 근대적인 勞動運動과 깊이 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동쟁의에 준하는 성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日帝下 소작쟁의는 이렇듯 勞動共濟會의 조직단체와 깊이 결합되면서 전개되었던 것이 분명하나 한편 小作人組合의 結成組織體와 또한 깊은 연관하에서 전개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小作人團體인 각종 소작인조합은 1920년대 초반 小作貧農이 중심이 된 小作人會와 중반 이후 계몽운동의 영향을 받아 조직된 農民組合 및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에 농민운동의 주체이면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조직된 赤色農民組合 등이 있었다. 따라서 농민운동은 1925년 天道教側이 창립한 朝鮮農民社系列과⁽⁵⁹⁾ 1924년 통합된 朝鮮勞農總同盟系列로⁽⁶⁰⁾ 양분화되어 있었다.

朝鮮農民社는 지주의 경제적 수탈에 대한 소작쟁의의 전개보다 農民의 地位向上을 위한

-
- (59) 1925년 10월 29일에 朝鮮農民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福利를 증진하기 위하여 한 개의 기관을 조직하고 기관지로서 농촌제동잡지인 『朝鮮農民』을 발간하였다. 支部는 郡單位, 社友會는 里邑單位로 하여 1928년 2월 말, 현재 中國을 포함한 전국에 158개소의 支부가 있었다. 창립시 朝鮮農民社의 규약은 (1) 本社의 목적은 朝鮮農民의 啓發에 있다. (2)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月刊雜誌 『朝鮮農民』을 발간한다. (3) 널리 社友를 모집한다. 社友는 매년 일금 1원을 납부하고 月刊雜誌의 頒布를 받는 외에 본사의 정한 바 특전을 받는다. (4) 本社事業을 특별히 贊助하는 자를 特別社友로 한다. (5) 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理事 약간명을 둔다 [飛田雄一(1981)].
 - (60) 첫째, 朝鮮農民總同盟은 지도정신을 유물론적 사회주의에서 찾았으나 朝鮮農民社는 至氣一元論에 입각한 人及天主義이며 둘째, 農總은 지도당을 러시아공산당으로 하였으나 農民社는 天道教青年堂이며 셋째, 농촌의 窮乏原因을 農總은 지주의 착취와 商工資本의 압박에 있다고 보는 반면 農民社는 정신적 제원인에 있다고 보았으며 넷째, 農總은 지주와 대립·투쟁하는 것을 유일한 경제으로 하였으나 農民社는 農村協同組合과 農事改良, 農民啓蒙 등을 내세웠다 [飛田雄一(1981)].

啓蒙運動과 實力養成運動에 주력하였으며 朝鮮勞動總同盟은 社會主義思想에 基底를 둔 대중적인 투쟁 방법으로서 소작쟁의의 전개에 유독 주력을 두었다. 1925년 朝鮮共產黨의 創黨으로 社會主義思想이 만연되자 朝鮮勞動總同盟에 가입했던 農민단체가 1925년 11월 農民운동과 노동운동의 분리안을 요구, 1927년에는 朝鮮勞動總同盟과 農民總同盟이 분리되기도 하였다. 중앙조직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農民運動은 소작쟁의의 전개에 두었던 그 기본방향을 민족적 대중운동으로 발전시킴에 따라 전국적인 조직단체로 성장하였다.

어떻든 1920년대 초반의 農民運動은 日帝의 식민지적 經濟收奪과 封建地主의 착취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小作人會를 결성하고 그것을 타도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3·1운동의 영향과 해외 각지에서의 抗日獨立運動의 영향은 물론 곳곳에서 성립된 소작인조합으로 인해 성격이 변화되기도 하였다. 經濟榨取에 대한 단순한 소작쟁의보다는 민중적이며 민족적 의식이 含蓄되어진 抗日運動의 요구를 다분히 지니는 가운데 전개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小作爭議運動은 소작농민의 자율적이며 자생적인 小作人會의 조직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安東郡의 豊山小作人會 및 榮州郡의 豊基小作人會가 주축이 되어 자율적인 입장에서 小作爭議運動을 전개한 바 있었다. 安東面 豊山小作人會에서는 1924년 4월에 악덕지주와의 소작쟁의 때문에 春耕을 하지 못한 회원 소작인을 위하여서 後援糧穀을 거두어주는 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또한 7월에는 春收作物의 小作料는 2할 이내로 하고 秋收作物은 畦 4할, 田 3할 5푼으로 하기 위한 투쟁을 맹렬히 전개한 바 있었다.⁽⁶¹⁾ 그리고 全北 益山郡에서도 1923년 5월 18일에 200여명의 소작인이 相助會 臨時會館인 裡里 天道教堂에 결집하여 小作權 회복을 위한 농성투쟁을 자율적이며 자생적인 측면에서 전개한 바 있었다 [朱奉圭(1984, p. 297)].

이렇듯 日帝下 小作爭議運動은 小作農民의 자율적이며 자생적인 측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나 192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한계에 부딪치게 된 것도 간파하기 어렵다. 그것은 곧 小作爭議에 대한 조직적인 역암이 뒤따르고 동시에 1930년대에 들어서서는 小作爭議를 사진에 방지하기 위한 법체계 정비를 단행한 바 있었기 때문이며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곧 小作調停令과⁽⁶²⁾ 農地令 [朱奉圭(1981, pp. 11~29)]의 발동이었다.

日帝下 小作爭議運動은 小作農民의 집단적이며 조직적인 戰爭運動 및 日帝抗拒運動으로

(61) 東亞日報 1924年 8月 17日字 參照。

(62) 朝鮮小作調停令이란 다음과 같은 요지의 것이었다. (1) 地主・小作人間에 小作料 기타 소작에 관한 쟁의가 일어났을 때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법원에서 조정토록 함. (2) 調停事件이 府郡島의 小作委員會에 附議시켜 조정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3) 調停成立은 裁判上의 利害와 같이 취급되고 끝까지 조정을 보지 못하면 民事訴訟事件이 될 수 있도록 함.

서의 성격을 지니는 가운데 전개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즉 沃溝郡 瑞穂面 瑞穂里에 있는 二葉社農場은 한국인소작인들에게 75%의 소작료를 현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와 같은 農場側의 요구에 대하여 沃溝農民組合의 위원장인 張介郁을 비롯하여 간부들이 농장측을 방문하여 45%를 감면할 것을 요구하는 강경태도를 보이자 瑞穂面 警察官駐在所는 다음날 새벽에 農民組合支部長인 張台成을 검거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식을 접하게 된 沃溝農民組合의 瑞穂面支部의 간부 36명은 駐在所에 몰려가서 지부장의 석방을 요구하였으나 도리어 群山警察署가 高等係刑事隊를 총동원하여 지부장을 비롯하여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간부 전원을 무조건 검거하는 사태로 발전되었다.⁽⁶³⁾ 沃溝郡 瑞穂面 支部長과 36명의 農民組合幹部들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500여명의 소작인들은 瑞穂面駐在所와 臨洪駐在所에 구류되어 있는 조합지부간부들을 奪置하였다. 소작료의 분쟁이라기보다도 群山警察署와 瑞穂農民組合員들의 실력대결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張台成을 비롯한 瑞穂面 農組支部幹부들은 群山署로 이송되어 高等係刑事隊의 취조를 받게 되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소작쟁의를 治安維持法의 차원에서 다루는 태도였다. 구속자들에게 급식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警察署에 몰려온 500여명의 조합원들을 경찰을 동원하여 해산시키는 처사마저 벌이는 사태였다.⁽⁶⁴⁾ 이 일대는 沃溝郡 二葉社農場 뿐만이 아니라 興業農場, 大合農場, 熊本農場 등이 집결된 日本人農場의 중추지역이었으며 이를 巨大農場이야말로 식민지 한국에 뿌리박은 일본인 劢力의 상징이었으며, 群山府와 沃溝郡을 관장하는 群山警察署는 日本人 農場勢力의 忠犬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한국인소작농들을 隸農狀態로 얹누르는 것만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어 있었다. 소작료의 高率負擔에 항거하는 운동도 隸農의 신분에 어긋난 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소작쟁의를 農民組合運動이라는 그릇된 명목하에 탄압을 감행하고 있었다 [學術院(1980a, p. 23)].

또한 沃溝小作爭議事件은 식민지 한국에서 처음으로 근대적 소작쟁의의 성격과 형태를 나타낸 사건이며 農民組合運動의 맹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었고 沃溝小作爭議事件은 비록 日本人 農場勢力を 수호하는 식민지정책의 실천집단이었던 朝鮮總督府의 관권으로 여지 없이 분쇄되고 말기는 하였으나 日本人農場에 예속된 韓國人小作農들이 지니고 있었던 隸農의 신분에 대한 조직적인 抗拒運動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망각할 수 없는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것이었다 [學術院(1980a, p. 183)].

위와 같은 내용들로부터 日帝下 小作爭議運動은 문자 그대로 조직적인 집단적인 투쟁

(63) 東亞日報 1927年 11月 27日字.

(64) 東亞日報 1927年 11月 29日字.

운동의 성격과 더불어 日帝抗拒運動으로서의 국면을 뚜렷이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小作爭議運動의 성격과 관련하여 본다면, 원래 社會問題로서의 小作問題라는 것은, 소작관계의 決定變更에 관하여 地主・小作人間に 소작쟁의가 빈번하고 또한 그 쟁의가 현저히 계급투쟁적 색채를 띠게 될 경우를 말하는 것 [澤村康(1932, p. 357)]이며, 小作爭議가 단체화하여 집단적 방법에 의한 運動展開가 격증하고 따라서 階級鬭爭이 激增하고 있었다 [朝鮮農會(1946b, p. 648)]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소작쟁의운동의 전개는 階級運動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점은 두말할 것도 없이 農業問題의 성립이 그 객관적 조건만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고 어떠한 主體的 의식을 요구함을 우리에게 반증한 것이라는 점에서 注目對象이 된다고 수 있다. 물론 주체적 조건의 본성이 반드시 階級的 對立意識에 한정된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단정적이지는 않지만, 그 본성은 그대로 실질화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小作爭議運動은 小作問題의 사회적 노골화, 즉 主體的인 問題意識의 성립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것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거니와 그것은 당초 民族的 自覺意識을 축발하였고 점차 階級的 對立抗爭 즉 소작인운동의 방향으로 확대됨으로써 日帝下 植民地政策에 대결하는 主體性의 진화과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선도적인 예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인 본질을 찾아볼 수 있기도 하다.

또한 日帝下 小作爭議運動은 第1次 世界大戰 이후의 民族自決思想의 영향과 3·1운동의 民族思想의 영향에 의해서 이룩된 民族思想運動의 일환이 되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즉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그 이후의 민족운동은 완전히 勞動運動(=勞動爭議運動), 農民運動(=小作爭議運動) 그리고 學生運動에 의하여 담당되었고 과거의 示威的 爆發이란 성격을 벗어나서 강렬한 조직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全錫淡 外(1947, p. 54)]. 초기의 소작쟁의는 주로 日本人 大農場 및 地主를 상대로 하는 것이었다. 즉 平北下二農場, 慶南迫門農場, 全南北의 多才農場, 熊本農場 등등에서 大爭議가 있었고 그것은 3·1운동의 양양된 민족운동의 물결을 따라 경제쟁의의 성격과 함께 민족운동의 성격을 높 후하게 여고 있었던 것이다 [全錫淡 外(1947, p. 165)]. 그리고 日帝下 小作制度의 實際運營에 수반되는 모순점에서 발생한 소작쟁의는 社會主義思想을 정신적인 기저로 한 농민들의 排日感情에서 비롯된 抗日運動이었다 [姜薰德(1980, p. 2)]. 또한 日帝下 地主・小作人の 관계는 지주에 대한 평등한 賃貸契約으로서 小作契約이 성립되는 순간부터 耕作을 하고 이에 따라서 土地의 賃貸料인 小作料만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日帝下 地主・小作

關係는 인권상 불평등하여 소작인의 생활보장은 물론 종래의 전통적인 생활보장마저 탈취하여 民族問題를 포함한 변형된 성격의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⁶⁵⁾

위와 같은 내용과 사실로부터 小作爭議運動은 3·1운동을 계기로 그리고 第1次 世界大戰 이후 民族主義思想의 대두를 매개로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과 더불어 하나의 民族運動과 反帝運動으로 昇華・發展되었던 사실을 지목할 수 있다.

그 밖에도 日帝下 小作爭議運動은 第1次大戰 이후에 급격하게 확대된 民族自決思想과 社會意識의 일반적인 성숙하에서 전개되었던 것으로서, 그것은 곧 1920년경부터는 第1次大戰後 일반 사회사상의 변천과 영향하에서 드디어 그것은 農村社會에 있어서 항상적 현상이 되었다 [朝鮮總督府農林局(1940, p. 31)]. 또한 소작쟁의는 歐洲大戰後의 社會思想變動의 영향하에 매년 그 전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田邊勘正(1938)].

그리고 第1次大戰後 일반 사회사상의 변경과 日本에서의 각종 社會運動의 발흥에 자극되어 韓國에 있어서도 각종의 사회운동이 활발하여 小作爭議를 촉구하고 소동케 하였다 [朝鮮總督府農林局(1940, p. 31)]. 小作人の 爭議手段으로서 단체적인 쟁의인 小作爭議運動은 단체적 대립에 수반하는 바의 소작료의 불납동맹 및 不耕作同盟과 같은 것이었고 또한 爭議關係者大會를 개최하여 宣言文書를 배포하며 學會兒童의 盟休를 도모하고 그 밖에 一般社會에 호소하는 수단을 강구하여 시위행동을 감행하고 마침내는 直接行動으로서 폭행, 협박, 소요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형사사건으로까지 확대된, 社會思想變遷에 부응하는 내용의 것이었다 [朝鮮農會(1944, pp. 665~666)]. 第1次大戰後에 물고온 新思想에 따라서 소작쟁의가 발생되었고 소작쟁의 발생건수는 1920년에 15건이었고 1922년에 24건이었던 것이 1924년에는 176건으로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참가인원도 906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어 다음 해에는 164건이 발생하였으며 참가인원도 6929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學術院(1980b, p. 180)]. 小作爭議는 단순한 經濟爭議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상적・민족적 투쟁과 결합되어 극히 複雜多岐한 가운데 전국에 만연되었다 [朝鮮農會(1944b, p. 531)].

日帝下 小作爭議運動의 전개는 근대적인 農村運動의 일환으로서 농민의 자율성에 입각한 農民自主運動의 성격과 더불어 농민의 福祉增進向上을 추구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이룩되었음이 또한 사실이니, 그것은 곧 日帝下 小作爭議運動은 토지로부터 유리된 소작인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경제적 위치에 관한 재인식에서 비롯된 운동이며 經濟的不安을 타개하기 위한 조직적인 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民族的 農民自立意識의 成長發展에서 비롯된 운동이었다 [姜薰德(1980, p. 3)]. 그리고 3·1운동의 민족운동이 舊指導層의 勞動拋棄와

(65) 東亞日報 1926年 12月 22日字 參照。

학생 및 勸勞大衆을 토대로 한 민족적 조직의 성장에 의하여 그 운동이 자못 본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組織的이며 강인한 自主運動으로 발전하였듯이 小作爭議運動도 自主的 운동으로 발전되었다 [崔虎鎮(1970, p. 254)]. 종래에는 社會思想家의 지도에 의한 쟁의가 대다수를 점하였던 것이나 오늘날은 거의 小作人 자신들에 의한 爭議로 轉化되고 있는 경향을 우리는 간파하기 어려운 일이다 [津曲藏之丞(1929, p. 140)]. 이상에서 日帝下 小作爭議運動이 農民自主運動과 農民福祉增進運動의 본질을 가짐을 알 수 있다.

3. 結論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日帝下 小作爭議運動은 小作權 移動의 반대 즉 小作權 繼續 그리고 高率小作料의 減免要求를 쟁점으로 한 운동의 본질을 지니고 있었다.
- (2) 日帝下 小作爭議運動은 勞動共濟會와 같은 組織團體와 깊이 결합하면서 전개된 것이어서 노동쟁의에準하는 운동의 본질을 지니고 있었다.
- (3) 日帝下의 小作爭議運動은 소작농민들의 相扶相助로서의 小作人組合結成組織下에서 전개된 자주적, 자율적 및 자생적인 본질을 지니고 있었다.
- (4) 日帝下 小作爭議運動은 조직적이며 집단적인 투쟁운동의 바탕에서 전개된 日帝抗拒運動으로서의 본질을 지니고 있었다.
- (5) 日帝下 小作爭議運動은 3·1운동을 계기로 그리고 世界大戰 이후 민족주의사상이 靖華되고 있었던 바탕에서 전개되고 있었던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과 더불어 하나의 民族運動과 反帝運動으로서의 본질을 지니고 있었다.
- (6) 日帝下 小作爭議運動은 歐洲大戰 이후에 급격하게 팽대된 민족자결사상과 사회의식의 바탕에서 이룩된 社會思想運動 및 民族自決運動의 본질을 지니고 있었다.
- (7) 日帝下 小作爭議運動은 근대적인 農村運動의 일환으로서 農民自主運動과 農民福祉增進運動의 본질을 지니고 있었다.

서울大學校 農經濟學科 教授
 京畿道 水原市 長安區 迎華洞 359-2
 전화 : (0331) 5-1238
 팩시 : (0331) 291-5830

參 考 文 獻

姜薰德(1980)：“日帝下 小作爭議의 性格에 관한 一考察”，誠信大學碩士論文。

權斗榮(1978)：『韓國近代史論 Ⅲ』。

全錫淡・李基洙・金漢周(1947)：『日帝下 朝鮮社會經濟史』，尚文社。

趙東杰(1979)：『日帝下 韓國農民運動史』。

朱奉圭(1980)：『韓國農業經濟史研究』，先進文化社。

_____ (1981)：“日帝下 農地令의 性格에 관한 研究”，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經濟論集』

20. 1.

_____ (1982)：“日帝下 小作爭議運動의 性格에 관한 研究”，서울大學校『農學研究』。

_____ (1984)：“日帝下 自生的 農民組織에 관한 史的 研究”，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經濟論集』23. 3.

崔虎鎮(1970)：『韓國經濟史』。

學術院(1980a)：『學術院講演要約集(人文科學部)』。

學術院(1980b)：『學術院會報』21.

京城鐘路警察署(1923)：『情報綴』。

宮嶋博史(1982)：“植民地下朝鮮人大地主の存在形態に関する試論”，『朝鮮史叢』5·6.

飛田雄一(1981)：“朝鮮農民史の展開”，『近代朝鮮の社會と思想』，未來社。

小早川九郎(1944a)：『朝鮮農業發達史(發達編)』。

_____ (1944b)：『朝鮮農業發達史(政策編)』。

鈴木武雄(1942)：『朝鮮の經濟』。

李采碧(1927)：“朝鮮小作問題”，『朝鮮農民』3. 11.

田邊勘正(1938)：『土地制度研究』。

朝鮮農會(1930)：『朝鮮の小作慣行』。

朝鮮銀行(1935)：『調查月報』3, 4. 6.

朝鮮總督府警務部(1922)：『朝鮮治安狀況』。

朝鮮總督府農林局(1934)：『朝鮮の農業』。

_____ (1933)：『朝鮮の農業』。

_____ (1940)：『朝鮮農地年報』第1輯。

朝鮮總督府殖產局(1928)：『小作農民に關する調査』。

津曲藏之丞(1929)：“朝鮮に於ける小作問題の發展過程”，京城帝國大學法文學會 編，『朝鮮經濟の研究』。

澤村康(1932)：『農業政策(上)』。